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조례로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경우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안 제6조)

1) 현행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의 내용이 시행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조문 제목을 제6조(시·도지사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등의 제한)로 변경

2) 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세부사항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도록 함

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4조의2)

1)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시 포함할 수 있는 사항(환경친화적 수산자원 조성계획, 수산자원 조성해역 관리계획 등)들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도지사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등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어구와 방법 등의 세부사항
2. 제한하려는 장소의 명칭 및 위치
3. 제한하려는 시기
4.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의2의 제목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 및 사전·사후영향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수산자원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수산자원 조성해역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 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제24조의2(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 <신 설>	제6조(시·도지사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등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어구와 방법 등의 세부사항 2. 제한하려는 장소의 명칭 및 위치 3. 제한하려는 시기 4.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의2(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 및 사전·사후영향조사)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u>환경친화적 수산자원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u> 2. <u>수산자원 조성해역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④ <u>제2항 및 제3항</u>----- ----- ----- ----- -----.
--	---